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26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김영주·송재호·김병기

정청래 · 강준현 · 진성준

이수진 · 허종식 · 김병주

장경태 · 이용우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 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현재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 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이에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 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 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생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u>제2조제2항에 따른</u>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u>해당하는</u> 시각장애인이 제1항	
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	
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	
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